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9
------	-----

2022. 09. 23.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2.9.23.)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정수용 기획조정실장)

### 1. 제안이유

- 서면회의 증가에 따라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수당 지급대상 제외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의 종류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 체계를 정비함(안 제4조제1항).
- 나.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수당 지급대상 제외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제2항).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위원회 위원 수당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제외 대상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됨.

### 나. 위원회 현황 및 수당 지급 현황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가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23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총 5,303명으로 위촉직은 4,566명(86.1%), 내부위원(당연·임명직)<sup>1)</sup>은 737명(13.9%)임.

< 위원회 구성 현황 >

(단위 : 명)

합계	위촉직	당연직	임명직
5,303	4,566	556	181

- 위원은 전문가, 학계, 일반시민,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시의원, 민간기업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여성 위촉위원은 1,915명(41.9%), 장애인 73명(1.6%), 청년 242명(5.5%)임.

< 위원회 위촉 현황 >

(단위 : 명, %)

합계	전문가	학계	시민 사회 단체	공공 기관	시의원	민간 기업	시민
4,566	1,586 (34.8)	1,214 (26.6)	348 (7.6)	327 (7.2)	280 (6.1)	271 (5.9)	540 (11.8)

- 2021년도 위원회 예산은 33억 1천 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위원수당(참석·심사수당) 25억 3천 5백만원(76.5%), 실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1억 7천 9백만원(5.4%), 위원회 관련 사업 경비(토론회·포럼·워크숍 개최)와 회의 운영 6억 3백만원(18.1%)임.

1)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본료(일당 15만원)와 초과수당(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5만원)을 지급함.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총액	위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회의 운영 비용	
		참석수당	심사수당	교통비 등 실비	사업경비	기타
2019	3,306	1,593	821	19	468	405
2020	3,167	1,496	897	15	575	183
2021	3,317	1,740	795	179	472	131

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

(1) 수당 지급 체계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1항)

- 안 제4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를 ‘참석수당’ 과 ‘심사수당’ 등으로 구분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현행	개정안
<p>제4조(수당)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p>	<p>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의 심사수당</p> <p>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p> <p>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p> <p>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p>
---	--

- 현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지급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하 ‘지방예산 편성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음.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근거】**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편성목	실정 (통계목 포함)	비고
201 일반운영비	<p>3. 운영수당</p> <p>가. 위원회 참석수당</p> <p>1)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p> <p>2)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계상</p> <p>3)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계상 가능</p> <p>나. 심사수당</p> <p>- 법령·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p> <p>예) 지방세이의신청심사, 투자심사 등</p> <p>-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 개정안은 ‘지방예산 편성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수당의 종류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체계를 정비함.

(2) 수당 지급대상 제외(안 제4조제2항)

- 안 제4조제2항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과 시의원의 수당 지급대상 제외 규정을 새로운 항으로 신설함.

현행	개정안
<p>제4조(수당) 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4조(수당)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까지 포함</p> <p>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p> <p>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별표3〕)에 따른 집행기준에서는 공무원과 시의원은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지급대상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공무원 지급제외** :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시의원 지급제외**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개정안은 하위법령 체계에 맞춰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공무원과 시의원의 위원회 수당 지급 대상 제외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는 입법 조치로 볼 수 있음.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수정안요지

##### 가. 수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단서를 신설함.

##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시의원에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2호 단서).

##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0명, 전원찬성)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9
----------	--------

제안년월일 : 2022년 09월 2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하도록 단서를 신설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시의원에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실비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2호 단서).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4조(수당) ② <u>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4조(수당) ② <u>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u></p> <p>1. <u>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까지 포함</u></p> <p>2.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u></p>	<p>제4조(수당) ②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u></p>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까지 포함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전 검토·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수당) ① <u>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한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u></p> <p>1. <u>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및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의 심사수당</u></p> <p>2.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u></p> <p>② <u>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4조(수당) ① <u>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p>1. <u>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협의·자문 등(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u></p> <p>2. <u>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u></p> <p>3. <u>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u></p> <p>② <u>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u></p> <p>1. <u>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u></p>

한 경우까지 포함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